

KORLOY Compliance

(윤리강령)

2024.01.05

한국야금 대표이사

임정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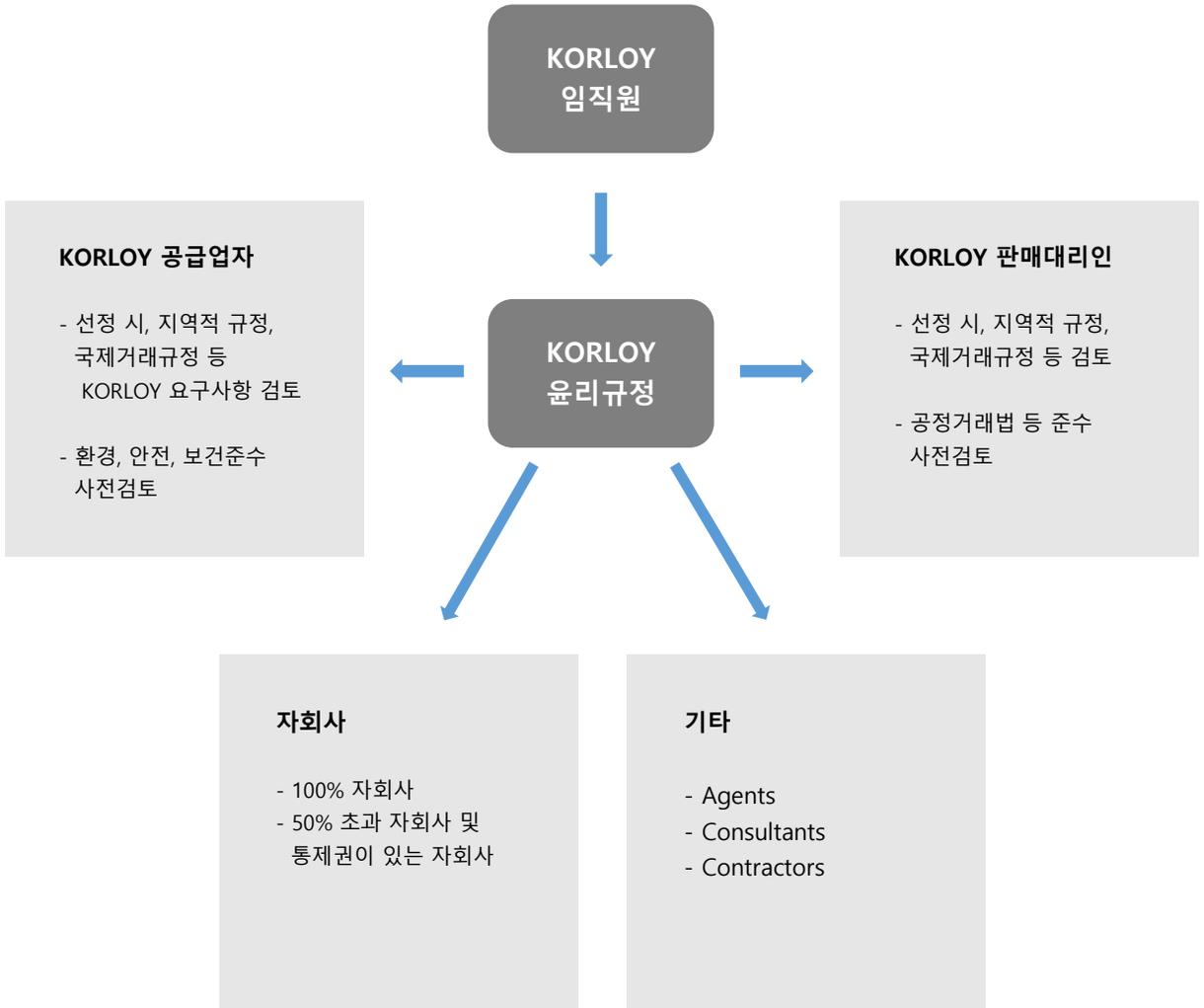


윤리강령(Code of Conduct)	02
포괄적인 준수 대상	03
광범위하고 상세한 규정	04
실천 SYSTEM (3T System)	04
윤리 문화 인프라(Compliance Culture)	05
옴브즈인(Ombudsperson)	05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	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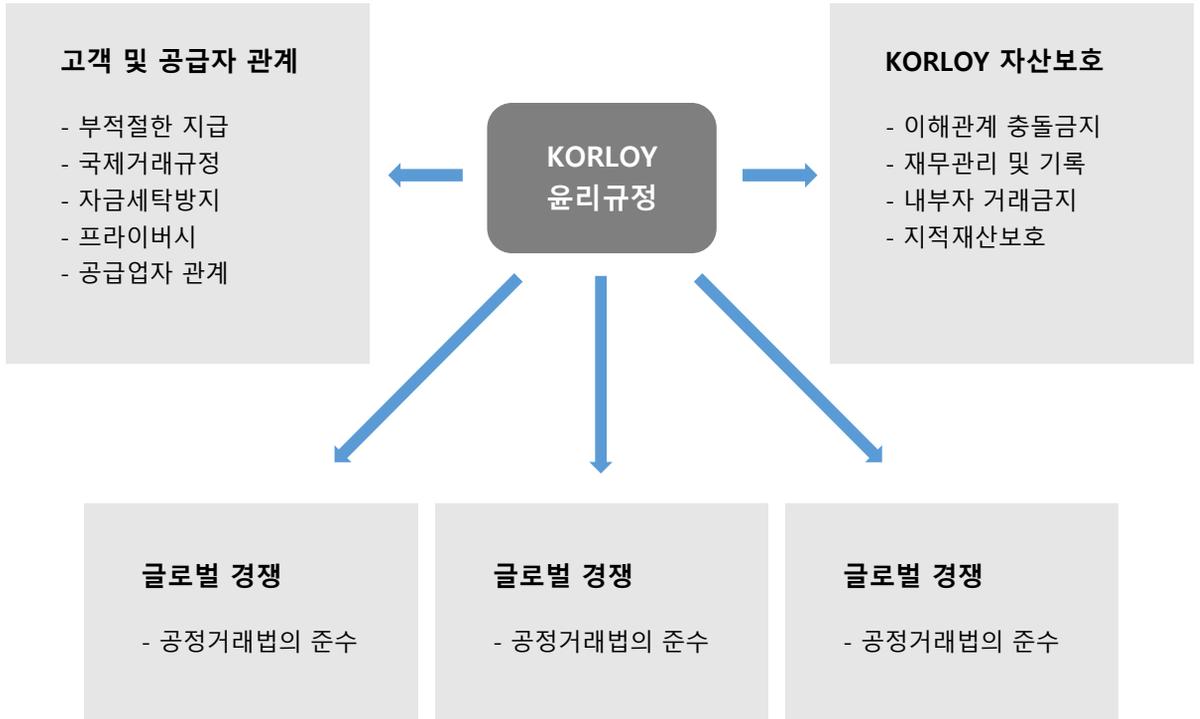
| 윤리강령 (Code of Conduct)

- 해당 국가의 법률과 법규 준수
-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주는 KORLOY의 모든 활동과 관계
- 회사 업무와 개인 용무간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
- 공정한 고용관행이 KORLOY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환경을 조성
-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, 환경보호에 노력
- 리더십을 발휘하여, 모든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인정하고, 가치있게 여기며 또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 기업문화를 유지

포괄적인 준수 대상



광범위하고 상세한 규정



실천 SYSTEM (3T System)

Training 교육

- 1단계 교육 : 매년 전사원과 신입사원 대상
- 2단계 교육 : 특별 위험 관리 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
- . 정직과 신뢰성 개인서약 절차 - 매년시행
- . 이해관계 충돌 규정 별도 추가 서명

Test 평가

- . 준법 / 정책 준수 모델을 이용한 설문
- . 설문평가 (업무, 법무, 재무) 및 자기 평가 설문

Tracking 검토

- . 사내 감사제도 (Corporate Audit Staff)
- . 준법 / 정책 준수 검토 위원회 (CRB) : 분기 또는 월별
- . Session D Review : 연간 정책준수 점검
- . 임원의 연간 목표에 Compliance 준수사항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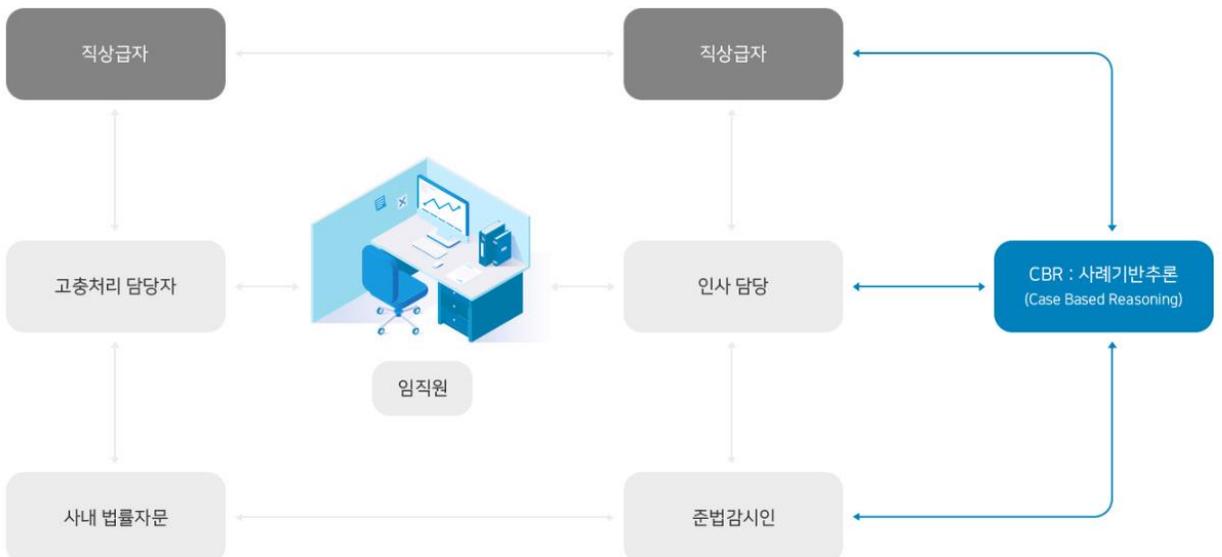
윤리 문화 인프라 (Compliance Culture)

※ 윤리경영 문화 창출에 비즈니스 리더의 책임을 특히 강조



※ 조직 내부에 자유로운 고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채널을 확립

옴브즈인 (Ombudsperson) 제도

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法 주요내용

1. 허용 한도(일명 3/5/10 법칙)

구분	한도금액	해당내역
음식물	3만원	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등
선물	5만원	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
경조사비	10만원	각종 부조금 및 회환, 조화 등

2. 적용 대상

구분	내용
적용 대상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57개, 지방자치단체 260개, 공직유관단체 982개, 공공기관 321개, 각급학교 21,201개, 학교법인 1,211개, 언론사 17,210 · 총 40,919개 기관(※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323개 기관)
적용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공직자) 국가-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,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(공무수행사인)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,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/위탁 받은 자,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 하는 민간인, 공무상의 심의/평가 등을 제공한 자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주요대상기관 별 대응

구분	A	B	C	법률해석
	부조금	화환/선물	식사	
공무원	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▶ 김영란 法 적용 (3/5/10 법칙만 가능)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▶ 김영란 法 비적용			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
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				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허기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(한국은행, 공기업, 지방공사/공단 등)
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				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
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				초·중교육법, 고등교육법, 유아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
학교법인의 임직원				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
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				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공무수행사인				①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/위탁 받은 법인/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 수행을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심의/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/단체
공직자 등의 배우자				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
일반인				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,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



법무처리(질의 절차)		
경영지원팀 법무담당	정	고석문
	부	전희수

※본 내용 이외의 법률 해석 필요 시 경영지원팀(고석문)에게 문의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적용대상기관 세부내역

분류	세부현황	
중앙행정기관 외	•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감사원, 선관위, 인권위	6
	"정부조직법"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(기획재정부 등)	42
	•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(공정위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금융위, 방통위, 새만금개발청, 원자력안전위원회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국민권익위원회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)	9
지방자치단체	• 광역(17개), 기초(226개), 시도교육청(17개)	260
공직유관단체	"공직자윤리법" 제3조의 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(한국은행, 공기업, 지방공사/공단,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, 출연, 보조 받는 기관/단체등)	982
공공기관	"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"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 ※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	321
각급학교	"초·중등교육법", "고등교육법", "유아교육법"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• 유아교육법 : 유치원 8,930개 • 초·중등교육법 : 초중고등학교 11799개 / 외국인학교 44개 •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30개 (고등학교 1, 대학 27, 대학원 2) ※ 3개 학교는 공직유관단체와 중복	21,201
학교법인	"사립학교법"에 따른 학교법인 ※ 1개 법인은공직유관단체와 중복	1,211
언론사	"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"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• 방송사업자 320개 (지상파방송 48개,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, 위성방송사업자 1개,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241개) • 신문사업자 3,400개 •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7,320개(잡지 5,071개, 기타간행물 2,249개) • 뉴스통신사업자 21개 • 인터넷문사업자 6,149개	17,210
총계 (공직유관단체 중복기관 323개 제외)		40,919